

수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사
(경유)

제목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전환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원에서 승인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(이하 '안생품')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·수입되는 제품(이하 '해당 제품')은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됩니다.
*가습기용 소독·보존제, 보건용 살충제, 보건용 기피제, 감염병예방용 살충제,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·소독제, 감염병예방용 살서제
3. 위와 관련하여, 법 부칙 제3조(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해당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'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' 고시에 수재된 물질*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(물질 승인유예기간+2년, 단, 일부 물질은 기간 상이)까지 해당제품의 제조·수입이 가능하며, 유통·판매는 2026년 6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,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('25.12.31.)이전에 살생물제품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,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2월31일까지 안생품 표시사항을 사용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*미승인, 지정해제, 제조·수입금지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제조·수입 불가
4. 만약, 해당 제품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서 제조·수입·판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58조제6호 등에 따른 '벌칙 부과 대상'이 될 수 있습니다.
5. 이에 해당 제품 제조·수입 업체의 경우,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시행일('26.1.1)을 고려하여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적극 이행해 주시길 요청드리며, 제품 취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체 보유제품의 관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기한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진행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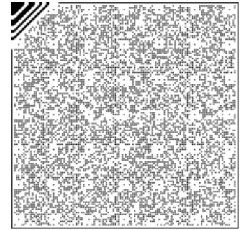
가. 대 상 : 안생품의 제조·수입업체

나. 신청 기한 : ~ '25.12.31.(법 개정 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)

다. 신청 방법 :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

(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취하신청매뉴얼)

6. 기타 관련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(1800-484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화학물질안전원장



전문경력관

나군

심기태

보건연구관

황문영

과장

전결 2025. 12. 8.

박경화

협조자

시행 유해성관리과-1240

(2025. 12. 8.)

접수

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화학물질안전원

/ <http://nics.mcee.go.kr/>

전화번호 032-560-8623

팩스번호 032-568-2039

/ gabera83@mcee.go.kr

/ 비공개(5,7)